

『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18일

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존 물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,
-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, 오수 및 하·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빗물이용시설의 설치·관리(안 제4조)
 -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을 권장함.
- 중수도의 설치·관리(안 제5조)
 -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·운영을 권장함.
- 재정지원 등(안 제6조)
 -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.
-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(안 제7조)
 -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.
-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(안 제9조)
 -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구미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둠.
- 물 재이용촉진 시범사업 발굴(안 제16조)
- 그 밖에 현행 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」 및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의 물 재이용 관련 조항 개정 및 이관(안 부칙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1)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2)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3)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수도권와 합의 되었음.
- 기 타 : 조례안 붙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□ 본 『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은,

-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증가로 물 사용량은 급격히 늘어나지만 한정된 물과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, 물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,
 - 빗물, 오수 및 하·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 이용하여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